

첨부

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운영위원회(1차) 심의 및 의결 결과

1 일시 및 장소

- (일 시) '22. 04. 08.(금) 13:30 ~ 16:00
- (장 소) 서울역 인근 회의실

2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운영위원회 심의 · 의결 사항

구분	논의내용	결과	위원회 논의사항 요약
안전1	평가일정 및 평가자 구성·운영 등 세부 추진계획	원안 동의	- 코로나-19로 인한 대면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설명 동영상으로 배포함에 따라, 기관의 질의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아래의 의견 동의 ☞ 공고일 이후 있을 질의응답을 취합한 후 모든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나, 질의응답 공지일과 평가 전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는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, 공고일 이후 일정기간동안 평가 상담반(공단 본부 및 중부권평가센터)을 운영하여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
안전2	현장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방법 변경	수정 동의	-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실시 도입에 따라 사업장 방문 시간 소요 및 기관 평가담당자의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, 수탁사업장의 상태보고서로 평가하는 일부 평가항목(15개 문항) 에 대한 상태보고서 선정 샘플 수 축소 필요 * (B.1.1.2), (B.1.1.4), (B.1.1.5), (B.1.1.6), (B.1.1.7), (B.1.1.8), (B.1.2.1), (B.1.2.2), (B.1.2.3), (B.1.2.4), (B.1.2.5), (B.1.2.6), (B.1.2.7), (B.1.2.8), (B.2.2) ☞ (現)수탁사업장 10개소 선정 → (改)5개소 이상으로 선정 수 변경에는 동의하나, ☞ "5개소 이상"이므로, 수탁사업장 수에 따라 최소 5개 ~ 최대 10개로 구체적인 샘플 수 선정 기준 정립이 필요함

안전3	'22년 기관 평가기준 세부항목 검토	원안 동의 및 일부 수정 동의	① 타분야 평가 공통 적용사항 도입 ☞ (문서화 여부 감점 항목 적용) 6개 문항* * (A.1.1), (A.1.2), (A.2.2.1), (A.2.2.5), (A.3.1.1), (A.4.1.1) ② 평가항목 개선(배점 강화) · (A.4.2)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관리(배점 30점) → (A.4.2) 사업장 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관리(배점 40점) ※ A.4.1.2 (배점 10점) 삭제 및 평가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A.4.2 배점강화(30점→40점) ☞ 산안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163호제4조에 따른 수탁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, 기존 수탁사업장 상태보고서 관리 외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의 적정성 여부 추가는 동의하나, ☞ <u>원안인 각각 항목의 최고 배점이 20점에서 상태보고서와 사업장 관리카드의 중요도에 따라, 상태보고서 항목 최고 배점 30점, 사업장 관리카드 항목 최고 배점 10점으로 변경 수정동의</u> ③ 평가방법 개선(1항목) · (A.4.1.2) K2B 전산 관리의 적정성(감점 -10점, 가점 +10점) ☞ 공단 전산시스템(K2B) 구축 및 산안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K2B에 상태보고서를 해당 전산망에 등록함에 따라, 기관에서 제출한 K2B 데이터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(감점 -10점) ☞ 기관의 자체 수준 향상 노력도 제고 등을 위해 기한 내 자체평가보고서 K2B 제출 여부 및 작성 내용의 누락 여부에 따라 가점 적용(가점 +10점) ④ 평가항목 신설(2항목) · (B.1.5) 수탁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결과(감점 -30점) ☞ K2B에 등록된 기관별 수탁사업장(약 2개소)을 현장 방문 평가하여, 기관의 기술지도 결과 모니터링 및 수탁사업장에 대한 상태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은 동의 ☞ <u>다만, 판단기준은 원안대로 하되,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자 매뉴얼에 별도 명시 필요로 수정동의</u>
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

<p>안전4</p>	<p>지도사 기관 대상 적용제외 평가항목</p>	<p>수정 동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도사 기관의 경우 의사 인력에 대해 위촉하므로, 해당 인력에 대한 제외 평가항목을 검토하였으나, 모두 `20년 기준(지도사 및 위촉의사 모두 평가) 그대로 평가 · (A.1.2) 업무관리체계 : 의사를 위촉하더라도 보건대행 업무의 프로세스 등을 알기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업무분장도 필요하므로 `20년 그대로 지도사 및 위촉의사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· (A.2.2.1) 지도요원 교육·훈련 계획 수립·이행 여부 : 지도사기관 특성에 맞게 계획 수립 등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, `20년 그대로 지도사 및 위촉의사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· (A.2.2.2)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이수 여부 & (A.2.2.3) 기타 외부 일반교육 이수 여부 & (A.2.2.6) 각종 학술대회 등 참여 실적 : 보건대행 업무를 위해 모든 인력의 전문성 향상은 필요하므로 `20년 그대로 지도사 및 위촉의사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· (A.3.3)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: 의사 혼자 방문할 경우 혈압계 등 장비를 직접 사용해야 하므로 의사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현실적으로 평가 시 대면평가가 불가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전화평가 등의 방법으로도 평가할 수 있기에, `20년 그대로 지도사 및 위촉의사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
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	--